

의안번호	2212346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 계 번호	25F455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장기계약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36(장기계약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)	○ 화주기업이 내항선사와 장기운송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내항선사와 3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, 환경친화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 ※ 단, 환경친화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 등급이 4등급 이상인 선박을 의미 － 공제율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액의 3~5% ※ 계약기간 3~5년: 3%, 5년 이상: 5% - 환경친화선박으로 계약 체결시: 5% － 적용기한: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6 (장기계약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, 내항선사와 장기계약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활용한 운송 계약 등을 체결한 화주기업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4조의36 신설)

- 개정안은 화주기업이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맺거나, 환경친화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화주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공제대상: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, 환경친화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
 - ※ 단, 환경친화선박은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친환경선박법’)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(4등급 이상)으로 인증을 받은 선박을 의미
 - 공제율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액의 3~5%
 - ※ 계약기간 3~5년: 3%, 5년 이상: 5%, 환경친화선박으로 계약 체결시: 5%
 - 적용기한: 2030.12.31.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화주기업과 내항선사간 장기계약 및 환경친화선박을 통한 계약체결 건수와 화주기업의 세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화주기업과 내항선사간 장기계약 또는 환경친화선박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 여부와 화주기업의 세액 등은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화주기업의 이익전망,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국제규정 등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참고로, 친환경 선박 인증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환경친화선박은 2020년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근 4년(2021~2024년)간 102척에 대하여 인증되었으며, 이 중 내항선박은 50척임

[표 1] 환경친화선박 인증 현황: 2021~2024년

(단위: 척, 톤)

인증연도	내항		외항		계	
	선박수	톤수	선박수	톤수	선박수	톤수
2021	8	1,134	—	—	8	1,134
2022	10	2,556	2	232,000	12	234,556
2023	10	1,796	22	2,252,643	32	2,254,439
2024	22	46,797	28	2,708,042	50	2,754,839
계	50	52,283	52	5,192,685	102	5,244,968

자료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